

(第12回－都市整備第4次)

<p>(參 照)</p> <p>서울특별시건축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건축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6. 11층(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한 경우 20층) 이상이거나 300세대이상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건축심의</p> <p>제1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6. 자동차관련시설(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p> <p>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5.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하며, 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p> <p>동조제7호중 “500제곱미터이상” 앞에 “3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 한하되,”를 삽입하고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8. 전시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p> <p>동조제9호중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하인 아파트형공장에 한한다. 다만,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부대복리시설인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하인 아파트형공장의 건축을 허용한다”를 “아파트형공장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11호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액화석유가스충전소와 석유 및 가스판매소”로 한다.</p> <p>제18조제7호중 팔호안의 내용을 삭제하고, 동조제8호중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7천500제곱미터이하인 아파트형공장에 한한다. 다만,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부대복리시설인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하인 아파트형공장의 건축을 허용한다”를 “아파트형공장에 한한다”로 한다.</p>	<p>제21조제10호중 팔호안의 내용을 삭제하고, 동조제11호중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하인 아파트형공장에 한한다”를 “아파트형 공장에 한한다”로 한다.</p> <p>제23조제5호중 “직업훈련소”를 “직업훈련소·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로 하고, 동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9. 판매시설(농·축·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p> <p>제26조제9호중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하인 아파트형공장에 한한다. 다만,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부대복리시설인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하인 아파트형공장의 건축을 허용한다”를 “아파트형공장에 한한다”로 한다.</p> <p>제30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환기를 위한 개구부로서 세대당 면적 0.5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도로에 접한 부분에서는 도로중심선까지 수평거리 3배)이하. 다만, 2층이하의 다세대주택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가 2미터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4배이하</p> <p>동조제4호가목(3)중 “개구부(환기를 위한 개구부로서 면적 0.2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를 “개구부”로 하고, 동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7) 당해 건축물과 인접건축물이 직각으로 위치하고 당해 건축물의 측벽이 인접건축물과 겹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3미터이상인 경우 동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다목을 삭제</p>
--	---

<p>제한다.</p> <p>나. 하나의 건축물에서 개구부등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p> <p>(1)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주개구부 또는 주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이하</p> <p>(2)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부분 사이의 수평거리의 4배의 거리에 상당하는 높이이하</p> <p>(3) (1) 및 (2)를 제외한 경우에는 가로의 규정을 준용하여 완화한다.</p> <p>제32조제1항제1호중 “운수시설”을 “운수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역사 및 공항청사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3. 공개공지 완화 : 일반인의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은 제외하고, 대지면적의 5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주변여건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자치구 건축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개공지의 면적을 완화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의 면적은 3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p> <p>제35조를 제36조로 하고,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35조(간선도로변의 건축물의 지변표시)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 또는 너비가 6미터이상인 2개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물 주출입구 부분 또는 대문등 통행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지의 지변을 표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p>	<p>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p> <p>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3. 서울特別市都市計劃決定案에 대한議會意見聽取의件(서울特別市長 提出)</p> <p style="text-align: right;">(14時 51分)</p> <p>○委員長代理 申龍吉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 都市計劃決定案에 대한 議會意見聽取의件을 上程합니다.</p> <p>(議事棒 3打)</p> <p>今會期에 審查하게 될 意見聽取 事項은 總 6件으로써 이중 1件은 지난 第73回 臨時會議時 다음 會期에 再審查하기로 保留된案件이며, 5件은 今會期에 New規로 接受된 것입니다. 지난 會期에 上程 保留된 1件에 대해서는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및 執行部의 說明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새로接受된 5件에 대해서만 住宅局長으로부터 提案說明을 들은 후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고案件別로 審查하도록 하겠습니다.</p> <p>住宅局長 나오셔서 새로 들어온案件 1159番부터 한건 한건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p> <p>○住宅局長 梁 甲 住宅局長이 說明드리겠습니다.</p> <p>(「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하는 委員 있음)</p> <p>○委員長代理 申龍吉 權光澤委員, 議事進行發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權光澤委員 權光澤委員입니다.</p> <p>지금 New林1 住宅改良再開發區域 指定 冠岳區 新林7洞 山101番地 一帶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 네번재 가면 都市計劃施設(公園用地)變更決定 冠岳區 新林7洞 山101番地 이것 같은 내용 아닙니까?</p> <p>○專門委員 宋在敬 그렇습니다, 關聯事項입니다.</p>
---	--